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6

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김은혜·유경준·이종배

최승재 • 배준영 • 류성걸

김태흠 · 김형동 · 박성중

김용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 차등적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,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 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,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특례) ① 제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 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 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제외한 일시적으로 보 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시적보유주택" 이라 한다)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.

-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납세의무자가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- ③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

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<신 설> | 제8조의2(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<u>상</u> 보유자에 대한 특례) ① 제 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세대 |
|-------|---|
| |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 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 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주 택을 제외한 일시적으로 보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택(이하 이 조에서 "일시적보 유주택"이라 한다)의 공시가격 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납세의무 자가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하 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시 적보유주택을 양도 등의 방법 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 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|
| | 따라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하여 |

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
- ③ 일시적보유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 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 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
 때 일시적보유주택에 대한 세
 액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
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 다.